|  |
| --- |
| **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 관련 외투기업 설문조사** |
| 1.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(비밀의보호) 및 제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 조항을 준수합니다.2. 조사기간 :2021년 11월 26일(금) ~ 12월 3일(금) < 8일간 >3. 회신방법 : (E-mail) smhong91@kef.or.kr / (Fax) 02-3270-74444. 문의사항 : (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) 02-3270-7453, 7381 |
| 회사명 |  | 업종 | 제조업 |  |
| 비제조업 |  |
| 성명 / 직책(직급) |  | 연락처 |  |
| 이메일 |  |
| **< 조사 목적 >**○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형사처벌(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)하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내년부터 시행(’22.1.27 )됨○ 최근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○ 이에, 경총은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언론홍보 및 정책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함  |

**1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귀 사업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? ( , )**

 **※** 보기 중 **2가지**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① 안전조직 신설, 강화 등 대대적인 안전투자 실시 ② CEO, CSO 선임 등 경영조직 개편

 ③ 법무법인 등을 통한 법률분쟁 대응체계 강화 또는 구축 ④ 별도 준비 없음

 ⑤ 기타(서술: )

**2.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? ( , )**

 **※** 보기 중 **2가지**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①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범위 및 의무내용 ② 과도한 형사처벌(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)

 ③ 감독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 ④ 법 이행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 부족

 ⑤ 기타(서술: )

**3. 산재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 ( )**

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영향 없음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

**4.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제 및 처벌수준이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 )**

 ① 매우 강함 ② 강함 ③ 보통 ④ 약함 ⑤ 매우 약함

**5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? ( )**

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영향 없음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

**6. 향후 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, 사업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것으로 생각하십니까? ( )**

 ① 신규투자 보류 ② 변화 없음

 ③ 사업규모 축소 ④ 기타(서술: )

**7. 귀사의 외국인 CEO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경우, 본국으로의 귀국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 )**

 ① 그렇다 ② 모르겠다 ③ 아니다

**8. 향후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벌칙(규제방식)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( )**

 ① 사법조치 전 시정기회 부여 ② 형벌규정 축소 및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

 ③ 개인처벌 삭제 및 법인 벌금형 상향 ④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

 ⑤ 기타(서술: )

**-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-**